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29643	
등록번호	230111-0296432	
상 호	주식회사 싱글리메타리얼스래보라토리 (Singular Materials Laboratory)	. . .
	주식회사 에스엠랩 (SM LAB Co.,Ltd.)	2019.03.28 변경 2019.04.10 등기
본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울산과학기술원 111동 103호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공단1길 27	2019.09.16 변경 2019.09.18 등기
공고방법	울산광역시내에서 발행되는 경상일보에 게재한다.	. . .
1주의 금액	금 500 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 주	. . .
	100,000,000 주	2020.03.24 변경 2020.04.0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40,000 주	. . .
보통주식	40,000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	42,106 주	2018.09.18 변경 2018.09.18 등기
보통주식	42,106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	43,791 주	2018.09.20 변경 2018.09.20 등기
보통주식	43,791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	400,145 주	2018.10.09 변경 2018.10.11 등기
보통주식	400,145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	532,197 주	2018.12.21 변경 2019.01.07 등기
보통주식	400,145 주	. . .
키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132,052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	600,224 주	2019.02.01 변경 2019.02.12 등기
보통주식	400,145 주	. . .
키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200,079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	680,256 주	2019.02.23 변경 2019.02.27 등기
보통주식	400,145 주	. . .
키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280,111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	765,290 주	2019.09.28 변경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6일 15시10분06초

등기번호	029643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보통주식 400,145 주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365,145 주	금 382,645,000 원	2019.10.0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899,223 주		2020.04.30 변경
보통주식 400,145 주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499,078 주	금 449,611,500 원	2020.05.06 등기

목 적
1. 2차전지소재 제조업 1. 2차전지소재 판매업 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조재필 671216-*****
사내이사 김준혁 921202-*****
사내이사 서민호 790424-*****
사내이사 황재성 930106-***** 2019년 03월 28일 사임 2019년 04월 10일 등기
대표이사 조재필 671216-*****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09번길 23, 206동 602호(신정동, 문수로 아이파크)
사외이사 원수섭 790907-***** 2019년 03월 28일 취임 2019년 04월 10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배분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이익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이익배당우선주식의 의결권 유무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한도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보통주식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6일 15시10분06초

등기번호

029643

결의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이므로 할 수 있다.

⑤ 무의결권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가 그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익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 또는 상환을 완료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제8조의3에 의한 이익배당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주주에게는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에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한다.

(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 3에 의한 우선주식 발행시,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하며,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주식의 발행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분할 병합, 합병 등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가 상환우선주식 또는 배당우선주식 발행시 본조에 따른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환청구기간이 연장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1. 상환청구기간내 상환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 3에 의한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상환주식”이라 한다)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부터 10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018년 12월 21일 설정 2019년 01월 07일 등기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등기번호

029643

1. 우선주의 내용

①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 라 한다)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으며,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②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하며 위 기간(이하 존속기간이라 함)이 경과하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제21조에 의해 투자자로부터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주로서 존속한다. 미지급배당금이 있거나 존속기간 만료시에 배당가능이익이 제21조 1항 3호에서 정한 상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상환가액을 초과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이 확정 후 2개월 이내까지 우선주로 존속한다.

기타 우선주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다.

③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기업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우선배당률: [발행가액의 1%]

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 참가함.

3. 실제 배당이 우선배당율에 미달할 경우 후년도의 누적여부: 후년도의 이익배당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배당받음.

4.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 우선주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 계산.

④ 투자자는 투자기업이 청산되거나 제3자에게 합병, 주식교환, 주식양수도 등 여하의 방식으로 피인수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에 있어서 보유중인 우선주의 발행가액에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차감하여 일할 계산한다)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를 분배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율이 본 건 우선주에 대한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보통주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 받는다.

⑤ 제1항에 있어 투자기업의 계획사업 영위를 위한 중요 유/무형자산이나 영업권 등이 대부분 처분되거나 소멸한 경우 사실상의 청산 또는 피인수로 간주하며,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기업의 해산, 청산 및 1항에 따른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가액은 공인된 감정인, 공인회계사 또는 그에 준하여 투자자가 인정하는 평가인에 의한다.

1. 상환권에관한사항

① 투자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하여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해당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상환청구기간: 투자자는 투자기업이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선주 존속기간만료일까지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상환방법: 투자자는 투자기업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은 상환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3호에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3. 상환가액: 상환을 청구한 우선주의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더라도 그

등기번호

029643

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이 계약에 의거 투자기업에 납입한 주금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상환하여야 할 날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3.01%]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4. 투자기업이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투자기업은 상환가액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일의 투자자의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5.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 가능한 법정준비금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일부 금액이라도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투자자가 판단하기에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상환준비금을 적립했다라면 상환에 추가적으로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산출되는 그 추가금액으로 하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배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내(이하 통칭하여 배상기일 이라 한다)에 배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6.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이 가능한 법정준비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가능한 최대한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하여 상환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7.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상환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때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항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항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전항 등에서 정하거나 투자자가 별도 요청한 조치를 포함하여 상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등에서 정한 상환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33조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투자기업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항과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회사가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되며 투자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1.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우선주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투자기업은 해당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고, 최초의 전환가격은 발행가격으로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조건에 의거 전환가격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2. 투자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격을 하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29643

회하는 주식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를 발행(증자 또는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이 투자자의 주당 실질 전환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인수한 우선주의 전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되며,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그 중 가장 낮은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 유상증자는 본 항의 전환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text{전환후 전환가격} = (\text{기발행주식수} \times \text{조정전 전환가격})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주발행주식수})$$

4.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전환가격은 분할비율, 병합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5. 상장된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 시가를 하회하는 주식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며,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다만, 본 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제2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text{조정후행사가격} = \text{조정전행사가격} \times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발행가액} / \text{시가})] \}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 주식수 산정시 전환우선주, 주식연계증권은 조정후 전환가격 산정 당시의 당해 전환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고, 신발행 주식수 산정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 특수사채의 전환가격 및 하향조정된 전환가격(사후적으로 전환가격이 투자자의 주당 실질 전환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아울러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6. 투자기업이 IPO 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타사와 인수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포함함), 영업양도, M&A(타인의 지분 취득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 포함)시 해당 거래가액의 산정을 위한 “투자기업” 주식의 평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해당 공모가격의 70% 또는 평가가액의 80%의 가격으로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조정한다.

7. 우선주의 전환청구 전에 제2호내지 제6호에 속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조정 전 전환가격은 직전회차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격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주는 전환가격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8.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③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함으로써 제2항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 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투자기업은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기업은 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투자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보유한다

⑤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29643

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019년 02월 01일 설정 2019년 02월 12일 등기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1. 우선주의 내용

①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으며,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②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하며 위 기간(이하 “존속기간”이라 함)이 경과하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제21조에 의해 “투자자”로부터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주”로서 존속한다. 미지급배당금이 있거나 존속기간 만료시에 배당가능이익이 제21조 1항 3호에서 정한 상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상환가액을 초과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이 확정 후 2개월 이내까지 우선주로 존속한다. 기타 “우선주”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다.

③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선주”의 우선배당률: 발행가액의 1%

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 참가함.

3. 실제 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달할 경우 후연도의 누적여부: 후연도의 이익배당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배당받음.

4.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 우선주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 계산.

④ “투자자”는 “투자기업”이 청산되거나 제3자에게 합병, 주식교환, 주식양수도 등 여하의 방식으로 피인수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에 있어서 보유중인 “우선주”의 발행가액에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차감하여 일할 계산한다)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를 분배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율이 본 건 “우선주”에 대한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보통주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 받는다.

⑤ 제1항에 있어 “투자기업”의 계획사업 영위를 위한 중요 유/무형자산이나 영업권 등이 대부분 처분되거나 소멸한 경우 사실상의 청산 또는 피인수로 간주하며,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기업”의 해산, 청산 및 1항에 따른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가액은 공인된 감정인, 공인회계사 또는 그에 준하여 “투자자”가 인정하는 평가인에 의한다.

2.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우선주”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투자기업”은 해당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고, 최초의 전환가격은 발행가격으로 한다

. 단, 본 계약에 따라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조건에 의거 전환가격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2. “투자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주식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발행(증자 또는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이 “투자자”의 주당 실질 전환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인수한 “우선주”의 전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되며,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그 중 가장 낮은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 유상증자는 본 항의 전환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기발행주식수} \times \text{조정전 전환가격}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4.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전환가격은 분할비율, 병합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5. “상장”된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 시가를 하회하는 주식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며,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다만, 본 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제2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전환가격} \times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발행가액} / \text{시가})] \}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 주식수 산정시 전환우선주, 주식연계증권은 ‘조정후 전환가격’ 산정 당시의 당해 전환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고, 신발행 주식수 산정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 특수사채의 전환가격 및 하향조정된 전환가격(사후적으로 전환가격이 “투자자”의 주당 실질 전환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아울러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6. “투자기업”이 IPO 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타사와 인수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포함함), 영업양도, M&A(타인의 지분 취득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 포함)시 해당 거래가액의 산정을 위한 “투자기업” 주식의 평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해당 공모가격의 70% 또는 평가가액의 80%의 가격으로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조정한다.

7. “우선주”의 전환청구 전에 제2호내지 제6호에 속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조정전 전환가격은 직전회차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격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8.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③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함으로써 제2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이 액면 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기업” 은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기업” 은 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투자기업”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상환권에 관한사항

① “투자자” 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기업” 에 대하여 “우선주”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투자기업” 은 해당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상환청구기간: “투자자” 는 “투자기업” 이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선주” 존속기간만료일까지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상환방법: “투자자” 는 “투자기업” 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 은 상환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3호에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3. 상환가액: 상환을 청구한 “우선주” 의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투자자” 가 이 계약에 의거 “투자기업” 에 납입한 투자금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상환하여야 할 날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4. “투자기업” 이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투자기업” 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5.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 은 “우선주” 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 가능한 법정준비금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우선주” 의 상환청구에 일부 금액이라도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 은 “투자자”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 이 “투자자” 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투자자” 가 판단하기에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상환준비금을 적립했다면 상환에 추가적으로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산출되는 그 추가금액으로 하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 은 배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투자자” 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내(이하 통칭하여 "배상기일"이라 한다)에 배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6.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 은 “투자자” 가 요청할 경우, “우선주” 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이 가능한 법정준비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가능한 최대한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하여 상환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7.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 은 “투자자” 가 상환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때 “이해관계인” 은 “투자자” 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항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 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항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전항 등에서 정하거나 “투자자” 가 별도 요청한 조치를 포함하여 상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이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등에서 정한 상환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33조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투자기업” 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항과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년 02월 23일 설정 2019년 02월 27일 등기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1. 우선주의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2)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 (3)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4)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5)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배당금과 배당금에 대하여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6)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7)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투자금(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상응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된 우선주식의 경우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이하 본조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에 연복리 3.0%를 가산한 금액(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차감하여 일할 계산)의 한도에서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8)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년 경과일 까지(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 존속기간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2)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나.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라.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 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가. 본 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나.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 또는 합병/인수(SPAC 등을 통한 우회상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통한 기업결합, 타인의 지분 취득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을 포함), 영업양도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가액(이하 “합병단가”)의[80]%에 해당하는금액이본 건우선주식의전환가격을하회하는경우는전환비율을다음과같이조정한다.

다. 조정후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보통주의수 = 조정전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보통주의수 × 조정전본 건우선주식의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 70% 또는 합병단가의80%에 해당하는금액

라. 회사가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마. 본 건우선주식의발행이후주식배당, 무상증자등으로인해발행주식수가증가하는경우, 본 건 우선주식의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 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전본 건우선주식의주주보유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바.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사. 회사가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등기번호

029643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아. 본 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 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자. 2020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 상의 2020년 회계연도말 기준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전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A + B) \times C] - (D \times 0.8 - E) \times 2.5 - F / A$

A: 발행 전 회사 주식수(680,256주)

B: 조정전전환가격에 따라 본건우선주식 및 본건 우선주식과 동일한 내용으로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및슈미트가 인수 예정인 신규발행주식(이하 본건 우선주식 및 해당 신규 발행주식을 총칭하여 “본건 신규 발행주식”)수

C: 조정 전 전환가격

D: 기준매출 (80억)

E: 2020년 회계연도말 기준 회사의 매출

F: 본건 신규 발행주식의총인수대금

다만, 본 산식에 따라 조정되는 전환가격의 하한은 조정 전 전환가격의 80%이며 I)삼성SDI로부터 R&D 투자자금 20억 이상 유치 또는 회사가 생산하는 양극소재 제품에 대한삼성 SDI의 사업부 이관 최종 승인 또는 ii)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월단위 공급 물량 최소 10톤, 3년이상 공급계약을 위한 구매의향서 또는 공급계약서 체결 시, 본 산식에 따라 조정되는 전환가격의 하한은 조정 전 전환가격의 95%로 한다.회사는 본호를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투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5)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미상환된 주식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3)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4)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

등기번호	029643
------	--------

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5)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2조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나.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다.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라.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마.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7) 전항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15%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8) 전항의 경우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위약금 및 본 계약에 기한 회사의 지급의무 있는 모든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우선주식을 회사에게 반환한다.

(9) 동조 제1항 제5호에서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2019년 09월 27일 설정 2019년 10월 01일 등기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우선주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3.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4.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5.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배당금과 배당금에 대하여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6.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7.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를 보유하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본 항에 따른 권리가 기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반대 등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음을 진술 및/내지 보장한다.

8.우선적 분배 : 투자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인수한 본건 우선주식의 총 인수대금과 미지급 배당금을 합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연복리 3%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단,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차감하여 일할 계산한다.)을 보통주식, 종류주식, 우선주식 등 기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 최우선적(Seniority)으로 분배 받기로 한다.

9.참가적 분배 : 제1호에 따라 우선적 분배를 한 후 잔여 재산이 남는 경우 투자자는 남는 재산에 대하여 기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참가적 분배를 받는다. (Participation)

10.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기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로 하여금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11.제1항의 해산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며, 이는 개정정관에 해산사유로 추가로 규정된다.

12.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x)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합병, 주식양도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부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y) 회사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 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z)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13.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지적재산권 포함)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현물출자, 실시권 설정 및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때

14.회사의 신규 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의 발행, 회사나 주주가 소유하는 기존 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의 매매, 또는 양자가 결합된 동시 또는 순차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단, 본항의 목적상 경영권의 이전이라 함은 주식의 투자자 또는 매수인이 해당 거래의 결과 회사 발행의 주식총수(단, 전환주식과 주식연계증권의 경우는 당해 거래일 직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복수의 순차 거래가 결합된 경우에는 최종 거래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 또는 증권에 관한 전환권, 인수권 또는 교환권이 행사 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래를 말한다.

15. 기타 법정 해산사유의 발생일

(1) 본조 제3항의 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투자자의 사전 또는 사후 서면 승인 하에 회사가 해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산 후의 계속결의로 인해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가 소유한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증권(단,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지분증권의 양도 대가로, 또는 그 양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청산의제분배액(아래에서 정의됨)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조에 따른 매수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산의제분배액을 투자자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지분증권’이란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포함)과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되거나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2) 본조의 목적상 청산의제분배액은 (i) 본조 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회사를 청산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동시에 (ii) 상기 각 호에 정한 해당 거래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회사가치를 청산을 위한 잔여재산(“의제 잔여재산”)으로 가정할 경우에 투자자가 그가 소유하는 지분증권에 관하여 의제잔여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분배받게 될 본조 제1항에 기재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때, 의제잔여재산의 산정은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16.1호 사유의 경우: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기타 유사한 거래에서 결정된 회사의 총주식가치로 한다.

17.2호 사유의 경우: 영업/자산의 양도대금에 회사의 잔여 순자산 가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부채의 인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과 부채가액을 합산한 다음 회사의 잔여 순자산가치를 다시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8.3호 사유의 경우: 1주당 신주발행가액 또는 구주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가액으로 한다. 단 신주 발행과 구주매각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일련의 거래로써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서의 총 발행가액 및 총 매매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대상주식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1주당 주식 가액으로 한다.

19. 회사가 제4항에 따라 투자자 소유의 지분증권을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 1차적으로 매수청구 효력발생 당시의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 절차에 따라 매수하도록 한다. 만일 배당가능 이익이 청산의제분배액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절차와는 별도로 그 부족분에 대하여 차등적 유상감자절차를 통해 매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60일의 매수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자기주식취득과 감자에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밟아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의결권과 회사의 이사들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법률상·사실상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 매수기한 내에 자기주식취득과 감자의 승인결의 및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만약 회사가 위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증권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해관계인 중 1인을 매수의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이해관계인은 본 조에 따른 인수인의 지분증권 매수의무를 부담한다. 본조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행사는 다른 조항에서 정하는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년 경과일 까지(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 존속기간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2.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 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4. 본 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5.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 또는 합병/인수(SPAC 등을 통한 우회상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 통한 기업결합, 타인의 지분 취득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을 포함), 영업양도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가액(이하 “합병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 70% 또는 합병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6. 회사가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회사가 법령에 따라 부여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됨으로 인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가격과 무관하게 본 호 및 본 항의 전환비율 조정 또는 전환가액 조정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7. 본 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 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8.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 주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9. 회사가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등기번호

029643

10. 본 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 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11. 회사가 2019. 9. 25. (i) DSC초기기업성장지원펀드, (ii) 슈미트벨류업개인벤처조합제2호 및 슈미트벨류업개인벤처조합제3호, (iii) 한국투자Re-Up펀드(이상의 상대방들을 총칭하여 “4차 우선주 투자자”)와 각각 체결한 ‘종류주식(우선주) 투자 계약서’ (총칭하여 “4차 우선주 투자계약서”)에 따라서 신주발행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그러한 각 4차 우선주 투자계약서 제11조 제3항 제8호에 기재된, 2020년 회계연도말 기준 회사의 매출액을 고려한 전환가격 조정(이하 “2020년 매출액 연동 전환가격 조정”)이 발생(4차 우선주 투자자 중 1인에 대해서라도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하였고 그 결과 조정된 4차 우선주의 전환비율(이하 “조정된 4차 우선주 전환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후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격) X Pc/Ps

각 변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또한, 본 호의 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주식의 수량과 금전의 액수를 계산할 때에는 매 연산마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Pc = V / (Itotal + Iadd)$

V = 기준기업가치(80,000,000,000원)

Itotal = 본 건 우선주식 발행전 회사주식 총수(765,290주)

Iadd = 2020년 매출액 연동 전환가격 조정이 발생(4차 우선주 투자자 중 1인에 대해서라도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하고 그러한 각 발생 직후마다 4차 우선주 투자자들이 각자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유하고 있던 모든 4차 우선주를 전환할 경우, 모든 4차 우선주 투자자들이 2019.

9. 28. 취득한 4차 우선주의 수량과 비교하였을 때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Ps = \text{본건 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104,536\text{원})$

(1)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2)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1.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3.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다.

등기번호	029643
------	--------

4.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5.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2조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4)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7. 전항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15%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8. 전항의 경우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위약금 및 본 계약에 기한 회사의 지급의무 있는 모든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우선주식을 회사에게 반환한다.

동조 제1항 제5호에서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2020년 04월 30일 설정 2020년 05월 06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8년 12월 12일 설정 2018년 12월 13일 등기 >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20년 03월 24일 변경 2020년 04월 06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되거나 양도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그 차액의 산정기준도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2018년 12월 12일 설정 2018년 12월 13일 등기 >

등기번호

029643

< 2020 년 03 월 24 일 변경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2018 년 12 월 12 일 설정 2018 년 12 월 13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2020 년 03 월 24 일 변경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로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8 년 12 월 12 일 설정 2018 년 12 월 13 일 등기 >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로 정한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20 년 03 월 24 일 변경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29643
------	--------

< 2018 년 12 월 12 일 설정 2018 년 12 월 13 일 등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20 년 03 월 24 일 변경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18 년 07 월 06 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8 년 07 월 06 일 등기
-------------------------	---------------------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